

의안번호	제 72 호
의 결 연 월 일	2007년 월 일 (제 256 회)

충청북도향토음식기능보유자지정조례 폐지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07년 1월 15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필

충청북도향토음식기능보유자지정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72
----------	----

제출연월일 : 2007년 1월 15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이유

- 향토음식에 대한 관광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증대시키고자 제정하였으나
 - '95년 1차 지정후 신청자가 없어 추가 지정과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시군별로 고장을 대표하는 향토음식을 선정하여 육성하는 한편, 대물림 전통음식 계승업소 인증, 모범업소 지정 등을 추진하고 있어 지정의 실효성이 미미하므로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충청북도향토음식기능보유자지정조례 폐지

3. 의안전문 : 불 입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발취 : 불 입

충청북도향토음식기능보유자지정조례 폐지조례안

충청북도향토음식기능보유자지정조례(조례 제2138호, 1994. 7. 22)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6조 (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